

## 제6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6. 12. 6.(화) 14:05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  
김재홍 부위원장  
김석진 상임위원  
이기주 상임위원  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### 5. 회의내용

#### ① 성원보고

#### ② 국기에 대한 경례

#### ③ 개회선언

#### ④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#### ⑤ 의결사항

##### 가. ㈜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6-68-259)

- 지난 제64차 회의(11.15)에서 제기된 피심인의 추가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의견과 시정조치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 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(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), 시행령 제15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2항제5호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(접근통제)제10항 등을 위반한

(주)인터파크에 대해 동법 제64조(자료의 제출 등)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,

- 동법 제64조의3(과징금 부과 등)제1항제6호에 따라 과징금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·감경한 금액(472,560만원)에 추가적 가중을 100분 20%에서 15%로 수정하여 산정한 4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,
- 동법 제76조(과태료)에 근거하여 2,500만원의 과태료를 원안대로 부과하기로 의결함

**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6-68-260)**

- o 지난 제53차 위원회 회의(9.21.)에서 개정안을 보고 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변경한 사항을 포함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의미가 모호한 ‘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’를 ‘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실’로 수정하고, 국외이전 중단명령과 관련한 명령의 기준,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**다.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6-68-261)**

- o 지난 제53차 위원회 회의(9.21.)에서 개정안을 보고 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변경한 사항을 포함한 「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목적변경 예외사유 명확화, 처리위탁 절차 개선, 국외이전 개념을 명확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**라.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6-68-262)**

- o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 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관련하여 진입규제 등 개선을 위한 「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원안대로 의결함

**마.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6-68-263~271)**

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제1항을 위반한 (주)KT, SKB(주), (주)LGU+, (주)SKT, (주)CJ헬로비전, (주)티브로드, (주)딜라이브, (주)현대에이치씨엔, (주)씨엠비 등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 -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'경품 등' 허용기준을 초과·제공하여 동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[별표4] 제5호 마목의 1를 위반한 (주)케이티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동법 제52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제1항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,
  - 위반정도가 경미한 현대HCN 계열4사(서초, 충북, 관악, 부산)와 씨엠비 계열4사(광주, 대구동부, 대전, 한강케이블)는 '경고' 조치하며,
  - 동법 제53조(금지행위 등에 대한 강징금 부과)제1항과 동법 시행령 [별표 6]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(주)LGU+에 45억9천만원, SKB(주)에 24억7천만원, (주)SKT에 12억8천만원, (주)KT에 23억3천만원, (주)티브로드에 1천6백60만원, (주)딜라이브에 6백만원, (주)CJ헬로비전에 6백30만원의 과징금을 원안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함

**바. 2015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(2016-68-272)**

- 방송법 및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, 방송사업자가 2015년도에 실시한 방송의 내용·편성·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부터 보고를 받고,
  - 지상파TV, 지역민방TV, 지상파 라디오, 지상파DMB TV, 종편PP, 보도PP, 위성, 홈쇼핑PP 등 평가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

**☑ 기 타**

**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**

- 차기 회의는 12월 14일(수)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**6. 폐 회 (16:25)**